

개정 전	개정 후
<u>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)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	<u>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)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]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 · 증여(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·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거나 다른 용도(임대를 포함한다)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</u>
<u>2.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(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. 다만,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.</u>	
<u>3.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· 증여(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·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거나 다른 용도(임대를 포함한다)로 사용하는 경우</u>	
<u>(⑤ (생 략)</u>	<u>⑤ (현행과 같음)</u>

■ 법률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생략)

제5조(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· 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36조의 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